<별표 29> <개정 2019.5.21.>

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

(제1-2조의2제2호 관련)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가.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(이하 이 항에서 “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”라 한다)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나.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다.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가. 7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 나.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다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라.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마.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(IT)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